

10. 建設技術管理法 施行規則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交通部 公告 第1996-219號 1996. 7. 29

주 요 골 자

-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국내점검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속철도 등 첨단건설기술분야는 외국의 점검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업체 등에 부여하는 부실점수는 반기 종료 후 2월의 자료 정리기간을 거쳐 적용하게 하며 이에 맞추어 최초 적용시기도 개정하고자 함.
 - 1995년 10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의 부실점수 최초 적용시기를 측정마감일('96. 6. 30) 2월 경과 후인 1996년 9월 1일로 개정
 - 1997년 1월 1일 및 1997년 7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최초 적용시기도 1997년 9월 1일로 개정
- 관계협회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실벌점 종합관리 기관을 벌점대상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개 정 이 유

고속철도 등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외국의 안전점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건설업체등에 부여하는 부실점수 적용시기에 자료 정리기간을 고려하는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정부는 현재 국내안전진단업체에게만 허용하던 건설공사 안전점검업무를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체로서 일정수준의 기술자격자를 보유한 업체는 국내에서도 건설공사 안전점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6. 7.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진단전문업체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업체는 국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어 외국의 안전진단업체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고속철도·신국제공항 등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첨단건설사업이나 국내 건설 기술진의 경험이 없어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수 없는 국책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외국 진단업체의 진단과 자문이 필수적인 입장이고 세계 무역기구체제하에서 외국 업체의 국내

진출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번에 시행규칙을 고쳐 허용케 하려는 것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내 안전진단업체는 66개 업체이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 안전진단업체는 자국의 법인체로서 국내 특급 기술자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 2인, 고급 기술자와 동등한 경력을 가진 자 6인 이상 등 모두 8명 이상의 경력기술자를 가지고 있어야 국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행주대교·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건설사고를 경험 하면서 더 이상의 대형건설사고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건설업체 등이 시공상 야기한 부실을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의법 조치를 하고 있고 부실공사로 인명을 사상케한 경우에는 대표자 및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법 등 관계 법령의 벌칙을 강화 개정한 바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고 처벌대상도 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

실들이 누적될 경우 결국 대형 부실을 야기할 수 있고, 건설업체와 기술자들의 부실추방 의지도 아직까지는 현장에까지 정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소하게 여기기 쉬운 부실을 부실벌점으로 처리하여 공사입찰 등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에게 부실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작은 부실까지도 방지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도록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부실벌점을 측정하는 기관은 발주청과 건설공사를 인·허가한 관청이며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 5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공공공사는 물론 지자체에서 인·허가한 민간공사까지도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벌기준은 부실벌점의 연평균을 3년간 합계한 값이 20점 이상이면 등급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도 최고 10점까지 감점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등 그 활용의 정도는 발주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최초 적용시기는 업체의 경우는 95. 10. 1~96. 6. 30간에 측정한 부실벌점을 2개월간의 자료정리기간을 거쳐 97. 9. 1부터, 기술자의 경우 96. 7. 1~97. 6. 30간에 측정한 부실벌점을 2개월간의 자료정리기간을 거쳐 97. 9. 1부터 적용하게 된다.